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 특례 〉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63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 특례(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천호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4.

다. 회 부 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둌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 4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 특례(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22조¹⁾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시·도지사²⁾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2026년 1월 현재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이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인 외국거주기간과 내국인 입학비율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3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할 것
2. 우주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우주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것

현행	개정안
	<u>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u> <u>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u> <u>2. 내국인의 입학비율</u>

나. 검토의견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와 「사립학교법」 제67조에 따라 학생·학교 평가, 교육과정, 학교생활기록, 학년제, 교원의 자격과 임용/징계 절차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부여되고 있음.

< 외국인학교 특례로서 주요 적용배제 규정 >

「초·중등교육법」 ²⁾	「사립학교법」 ³⁾
제7조(장학지도)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학년제) 제29조(교과용 도서)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52조(자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55조(복무)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9조(휴직의 사유) 제60조의3(명예퇴직)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위임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4)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또는 ②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③외국인의 자녀여야 하며(입학 자격),

그 중 ①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되, 시·도 교육감은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음(입학 정원).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입학 자격과 정원 비율을 시·도 조례로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립학교법」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외국인학교 제도의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특별히 내국인 입학에 용이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6년 1월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총 38개의 외국인학교 중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운영 중인 학교는 3곳⁵⁾인데,

해당 학교에서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정도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 수요가 현행 입학 정원에 비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별 내국인/외국인 학생 수 및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외국인 입학생 현황 >

(단위: 명, %)

학교명	지역	내국인 입학생 수	내국인 입학생의 정원 대비 비율	정원
대전외국인학교	대전	126	8.4	1500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경남(거제)	10	3.9	257
경남국제외국인학교	경남(사천)	3	0.8	365

주1: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를 전부 합한 수치임.

주2: 2025년 9월 학교별 정보공시 기준임.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 중 현행 법령이 정한 내국인 비율 상한인 30%를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학교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5) (대전) 대전외국인학교, (경남)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경남국제외국인학교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과 정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및 정원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및 정원 특례 현황 >

근거 규정	입학자격 특례	입학정원 특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X	O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X	X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X	X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제22조	O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	O	X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O	X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4조	O	X

※ 내국인 입학자격 특례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에 관한 입학자격을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하며, 입학정원 특례는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시·도 조례나 교육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함.

법률에서 특례가 부여된 지자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달리 정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 않으나,

경제자유구역⁶⁾과 연구개발특구 중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⁷⁾로서 각각 2025년 5월과 11월 조례를 제정하여 내국인의 입학자격인 외국 의무거주기간을 폐지하면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50%로 확대하였음.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6472호, 2025.6.27. 제정)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6629호, 2025.11.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전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국인의 입학자격) ①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u>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은 요하지 아니한다.</u> ② 대전외국인학교의 <u>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외국인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입학자격) ① 광주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u>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은 요하지 아니한다.</u> ② 광주외국인학교의 <u>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u>

6) 2026년 1월 현재 인천, 광양, 부산진해, 경기, 대구경북, 충북, 강원, 광주,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등) ②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2. 내국인의 입학비율

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우주산업클러스터**(대전, 경남, 전남) 중 조례를 통해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의 입학 자격·정원 특례를 이미 마련한 대전광역시와 달리, 광역특구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별도로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다만,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3항⁹⁾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규칙을 통하여도 외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이 외국인학교 정원의 5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정할 수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 중 내국인의 입학 자격에 관하여는 특례를 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입학 정원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도 경남과 전남의 교육규칙으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정원 비율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연구 인력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한편, 유사한 특례를 반영한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8) 광역특구에는 대덕(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원 6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음.

9)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서천호의원·문금주의원 대표발의)에 위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어
우선 적용 해당 특별법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7